

6개월 회전정기예금 특약

제1조(적용범위) 회전정기예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(예금과목)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(가입대상) 이 예금은 가입대상 제한이 없습니다.

제4조(계약기간)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합니다.

제5조(최저가입금액)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일십만원 이상으로 합니다.

제6조(회전주기) ① 이 예금에서 ‘회전주기’라 함은 예금주가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을 변동 적용하는 단위를 말합니다.

② 이 예금의 회전주기는 매 6개월 단위로 하며 회전주기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7조(이자지급)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(단리식)하거나, 회전주기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(복리식)합니다.

②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할 때 선택하여야 하며,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의 변경만 가능합니다.

③ 예금주가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 요청일이 속한 회전주기 내의 경과월분에 대한 이자지급은 변경 요청일에 단리식으로 계산하여 일괄 지급되며, 미경과월의 이자는 해당일에 매달 지급됩니다.

제8조(이자율) ① 이 예금은 예금일 및 예금일로부터 매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날을 이자율 결정일자로 합니다. 단 해당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이자율을 해당하는 날의 이자율로 하여 적용하고,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.

② 이 예금의 이자율은 매 이자율 결정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에 따라 변경 적용됩니다.

③ 예금주가 만기일 후에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예금을 찾는 날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 후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, 만기지급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만기 후 이자율은 변경된 만기지급 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일로부터 기간구분하여 계산합니다.

제9조(중도해지) ① 예금주가 만기일 전에 예금일로부터 1회전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자율에 의해 지급합니다.

② 예금주가 만기일 전에 예금일로부터 1회전주기 이상 지난 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매 회전주기의 총족분에 대해서는 제8조1항, 2항, 3항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며, 매 회전주기가 지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이자율 결정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는 예금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자율에 의해 지급합니다.

제10조(분할지급) ① 이 예금은 만기지급분을 포함하여 4회에 한하여 분할해지 가능합니다.
② 만기일 이전 분할해지한 경우 분할해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합니다.